

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12. 5. 17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2.5.8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2.5.11.
- 다. 상정일자 : 제16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12.5.17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나 성 석 보건행정과장

가. 제안이유

우리구 보건소를 이용하는 구민의 건강증진 및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 및 증명발급에 대한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삭제 및 조정하여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수수료 및 진료비 중 보건소에 실시하지 않는 증명 발급 및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고, 골밀도 검사 장비 신규도입에 따른 원가인상에 따라 검사료 인상(안 제2조 별표)

- 2) 65세 이상인 환자의 수수료 감면 규정을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환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으로 명확히 규정하고, 특수임무 유공자 중 환자의 본인부담금 진료비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수혜자 확대(안 제3조)
- 3) 결핵사업으로 징수된 세입 재활용 규정 삭제(안 제4조)
- 4) 알기쉬운 법령용어 정비 기준에 맞춰 용어 정비(안 전반)

3. 검토보고 (김건재 전문위원)

0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수료 및 진료비 중 보건소에서 실시하지 않는 증명 발급 및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고, 골밀도 검사장비 신규도입에 따른 원가 인상에 따라 검사료를 인상하며, 65세 이상인 환자의 수수료 감면 규정을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환자의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으로 명확히 규정하고, 특수임무 유공자 중 환자의 본인부담금 진료비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수혜자를 확대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.

0 이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등에 맞게 유료 예방접종 항목 중 일부를 개정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